



LPG 충전업 관련 질의·회신

산업자원부

**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액법56조의2의제5호 규정상 보호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함. 본인은 자동차판매사원으로 장애등급 1급의 아버지와 장애등급 4급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아버지 외 어머니(어머니가 공동명의로 등재되어야만 할부대출가능)와 아들이 공동명의로(보호자)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계법 예시대로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액화석유가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런 전제하에 본 건의 경우는 아버지는 71세, 어머니는 67세며, 두분다 장애등급이 있는 관계로 어머니를 보호자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짐.

계약자 외 2인이라 할지라도 보호자로서 정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 혹여

예외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유용이 아닌 것이 확실할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예외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 아닌지<5.27>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호에서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보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보호자보다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액법상 보호자는 법 취지상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장애인 보호자로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보호자가 다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에 관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인에 한하여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액법상 장애인 1인당 1대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사망 장애인의 공동소유보호자와 상속보호자가 다를 경우 다수가 가능 <가스산업과 5.29>



LPG 충전·판매사업 허가와 공급범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신규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다시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막대한 후유증 발생하고 있음.

- 터무니없는 저가공급으로 매각정리 후 소비자들로 부터 원망과 불신 발생
 - 공급물량확보에 치중하여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고 있어 소비자피해 가중
- 따라서 공급범위를 보다 축소시킬수는 없는지.

또한, LPG 충전·판매사업 허가는 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해줄 수는 없는지.

-LNG 보급으로 LPG의 사용량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거래처 빼앗기가 비일비재 함.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시가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나 허가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이주 사업자만 피해를 보게 됨.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유연성 있는 허가가 요구됨.



현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판매사업자가 용기LPG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시도와 연접 시군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에 대해서는 공급지역제한은 없음. 동 규정은 안전관리와 유통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다 강화된 공급지역제한에 대하여는 향후 법령개정시, 안전관리와 사업환경 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금번의 법령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향후 법령개정시 지자체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가스산업팀 7.11>